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5. 29 선고 2018가단3194 판결 [매매대금감액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론 종결 2019. 5. 1

판결 선고 2019.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 0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 11. 1.부터 2016 . 5. 27.까지는 연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0. 6.경 피고가 신축한 평택시 D 상가 중 5, 6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분양받았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그런데 2005. 7. 내지 8.경 이루어진 피고의 설계변경에 따라 이 사건 상가 5, 6층의면적이 기존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면적 대비 28.86㎡씩 57.72㎡가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따른 분양대금 15억 9,710만 원을 피고에게지급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줄어든 면적에 따른 부당이득금 4,190만 원 {= 57.72㎡(약 17.46평) X 이 사건 분양계약상 평당 가격 240만 원} 중 4,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유력한 증거가 되므로,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판결 참조).

갑 제10호증,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4가합2619,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03)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한사실(위 소송에서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 소송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있으나 그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동일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5.27. 선고한 판결(판결문 제13, 14쪽)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면적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한 사실,위 분양대금 청구의 소 항소심 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조영진